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10086, 10133(병합)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서영(기소), 홍지선(공판)	
판 결 선 고	2026.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6고정10086』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2. 21. 09:02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3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P주소 '(IPV4 1 생략)'를 사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F' 영화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및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26고정10133(병합)』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2. 22. 22:06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P주소 '(IPV4 1 생략)'를 사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주식회사 G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H' 영화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및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6고정10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고소보충자료

1 수사보고서(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회신자료)

『2026고정1013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G의 고소장, 진술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3

1. 불법공유증 확인자료

1. 수사보고서(통신이용자정보 회신 - I 인터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으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참작

판사 이누리 _____